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0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3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3
2. 총괄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2
1.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2. 지역 의사선발전형, 학비등의 지원·지원중단·반환 등	14
3. 의무복무 관련 사항	21
4.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면허취소 및 과태료	30
5. 부칙	34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7.
- (3) 회 부 일 : 2025. 2. 10.

2.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제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지역의사선발전형·의무복무기관 등을 정의하고,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일정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가 입학금 등을 전부 지원하되, 지역의사가 되면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의무복무기관 별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	조문
장 구분 없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5조(학비등의 지원)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7조(의무복무)
	제8조(전공의 수련)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제10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장	조문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제13조(시정명령)
	제14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제15조(면허취소 등)
	제16조(과태료)

2.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입원사망비율·뇌혈관사망비율·응급사망비율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의료인력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시도(서울, 328.9명)와 적은 시도(세종, 142.3명)간 차이가 약 2.3배(2024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병·의원의 경우 특히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가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 입학과정에서부터 지역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것으로 예정된 의과생을 선발·교육하고 학비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 집중 배정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적극적인 의료인력 배치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²⁾

< 지역별 의사 수 현황(2024년) >

지역	지역별 활동 의사수(명)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 현황(명/십만명)
서울	30,689	328.9
부산	8,096	247.8
대구	5,844	247.2
인천	5,634	186.5
광주	3,599	255.5
대전	3,484	242.1
울산	1,819	165.7
세종	566	142.3
경기	24,355	177.8
강원	2,562	168.8
충북	2,496	156.9
충남	3,224	150.9
전북	3,473	199.7
전남	3,098	173.2
경북	3,640	143.8
경남	5,474	169.6
제주	1,231	183.6
전국 평균	6,428	213.4

자료: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자료 활용

- 1) 언론보도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한계…시민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공감”, 아시아투데이, 2024.6.3.,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공백 해소하자”, 경남신문, 2024.7.31., “[사설]의대 졸업생 수도권 쏠림에 지역의료 씨가 말라”, 강원일보, 2024.8.2.
- 2)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0.7. 지역의사(300명/년)와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학자(100명/년)를 양성하기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이에 참여하게 대립하였고, 이후 2020.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 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음.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에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대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안 전반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됨.

□ 반면,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³⁾

- 이러한 의견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나 지역의료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취약지 지원, 공중보건·지역의료 분야에 교육 강화, 취약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지역 의사 양성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2, 이하 ‘김원이의원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95, 이하 ‘박덕흠의원안’)과, 필수의료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안에 지역 의사 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김윤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법안 외에도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김미애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있으므로, 지역 의사 제도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지역필수

3)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사제” 도입 추진계획을 밝히고 2025년 2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실시함.⁴⁾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공의의 장학금·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지역의사 지원과 유사하지만, 복무기간을 법으로 정한 제정안과 달리 정부와 의사 간의 계약으로 진행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 2건⁵⁾이 발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제1법안소위(2023. 12. 18.) 및 전체회의(2023. 12. 20.)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으나,⁶⁾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바 있음.⁷⁾

4)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10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함. 시범사업은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선정하여 7월부터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혜택(주거, 교통, 연수, 자녀교육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예정)을 제공할 예정으로 2025년 예산 13억 5,200만원을 배정함

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법안」(권철승의원 대표발의)

6)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부 및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소위 및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 중에 있었으므로 정원규모 확대 결정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정부·여당)이 제기되어, 표결 처리함.

7)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정)

-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제 법안별 구체적 논의를 통해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수정)

-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역시 필요하며,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반대)

-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제도(2~5년간 의무복무)⁸⁾도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역 의료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규제 사항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8) [참고자료1]

- 지역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방식보다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보상 방안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 인구감소와 수가 불평등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 없이 법으로 지역의를사를 강제하는 것은 반대이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됨.

(5) 대한한 의사협회(반대)

- 해당 법안은 많은 시간(배출까지 11년)과 비용(학비 전액, 면허취득 후 주거지원 등)이 소요되어 문제해결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반대함.
 - 대안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한의사에게 추가교육(2년) 및 검증을 통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지역의사 배치 이후 협업이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이 필요함.

(7) 대한작업치료사협회(반대)

- 의료인력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인력배치로 해결할 수 없고, 근무환경, 인프라 확보, 경력개발 어려움 등 실효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0년 의무복무 강제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동 법안은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찬성함.

(9) 한국소비자단체(반대)

- 지역의사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 등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설사 의사를 배치하더라도 이용이 낮을 것으로 보여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

(10) 파주시 보건소(찬성)

□ 의무복무 기간을 ‘평생 또는 전문의 자격취득 이후 30~40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0년 의무복무기간 중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5년에 불과하며, 입학 후 졸업까지 학비 등을 전액 지원받았다면 졸업 이후 해당 지역 의사로 평생 근무해야 마땅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내용

- 제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 의사·지역 의사선발전형·의무복무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지역 의사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역 의사 양성에 관한 일반 규정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의사”란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 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지역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기관·시설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 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특정 지역’이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음. 제정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지역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지역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그 의미 또는 지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김원이의원안에서는 “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⁹⁾
- 또한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안 제7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조항에서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정안은 제2조에서는 ‘근무’라는 표현을, 제7조에서는 ‘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¹⁰⁾

9) 생각건대, “지역”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단어이므로 이를 별도로 정의하기보다, ‘지역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특정 지역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0) [표준국어대사전]

- 근무: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
- 복무: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2.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등의 지원·지원중단·반환 등

가. 내용

- 제정안은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토록 하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등을 전부 지원하되, 휴학·유급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퇴학·자퇴·면허취소·의무복무 미이행, 졸업 후 3년내 국가시험 미합격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 정 안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지역 의사선발전형의 중요 내용 구체화 필요

- 지역 의사선발전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의대 입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것과, 동 전형 비율을 정할 때 고려사항만 법률에서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지역 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①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향후 지역 의사가 되었을 때 의무복무할 지역이 정해지는지, ②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대학에 지원하되, 선발시부터 향후 의무복무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지, ③ 출신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에만 지원 가능하지만, 의무복무지역은 향후 지역의사가 되었을 때 정해지는지, ④ 출신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에만 지원 가능하고, 의무복무지역도 해당 지역으로 정해지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음.

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 입장에서, 향후 지역의사가 되어 근무할 지역을 대학 지원 시부터 선택할 수 있는지, 또는 원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되는지 등을 결정짓는 문제임. 동 제정안이 일정 부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단위로 선발하여 해당 지역의사를 양성할 경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나 서울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 기존 지역인재선발제도와 관계 고려 필요

□ 제정안과 별도로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¹¹⁾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선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¹²⁾ 동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약계열 학과에서는 지역인재비율이 40% 이상¹³⁾이 되도록 선발하여야 함.¹⁴⁾

그런데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선발제도의 경우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는 소위 인기 있는 학과에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¹⁵⁾

- 참고로,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농촌 등 지역의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¹⁶⁾ 현재 지역인재선발제도 출신 의료인력의 수도권

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 제도는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여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13) 강원권 및 제주권은 20%.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별표] 참조. [참고자료2]

14) 의약계열의 지역인재선발비율은 2022학년도까지 권고사항이었으나,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2023학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음.

15) 제19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4.

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및 이동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2022.11.

유출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졸업 후 근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음.¹⁷⁾

- 그런데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입학 전 거주요건은 있으나 졸업 후 근무지에 관한 제한은 없는 반면, 동 제정안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제도는 입학 전 거주요건은 없으나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두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임.

(3) 국가의 학비등 지원 조항의 강행규정 여부

- 제정안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학비등)을 국가가 전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사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제정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현시점에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¹⁸⁾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1대국회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① 매년 30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¹⁹⁾ ② 이들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 수준(1인당

17)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08335,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소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3119,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8) “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학비등을 지급할 대상과 ②지급 범위 및 ③지불 방안 등의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2025.2.16.

19) 당시 “의과대학 정원확대 추진방안”(2020.7.23.)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3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학별 배정 인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었음.

연간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1,073억원(연 평균 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²⁰⁾

- 다만, 국가의 재정 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학비등의 지급을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이 있음.

(4) 체계자구 수정

- 한편, 다음과 같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함.

- 제정안은 반환 사유 발생시 학비등과 법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이자”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 등과 같이 이자산출시 적용되는 법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정안 제6조제2항에서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하는 등 일정한 경우 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제5항에서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환금을 누구에게 반환하는지, 미반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타 입법례에 따라 징수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²¹⁾

20) 21대 김원익의원안 비용추계서.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을 통해 장학생 120명에 대한 연간 장학금(평균 1,730만원)의 50%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10억 2,000만원을 배정함(2025년 기준)

21)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한편, 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는 용어의 정비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강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²²⁾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22)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5947) 대안의 주요내용 中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3. 의무복무 관련 사항

가. 내용

- 제정안은 지역 의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면서, 전공의 수련기간, 군복무기간, 의사면허 효력 정지기간 등 일정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의무복무기관의 배치와 변경에 관한 절차, 겸직금지, 실태보고 및 시정명령 등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안 제7조부터 제13조).

제 정 안

- 제7조(의무복무) ① 지역 의사는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② 지역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종사하거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3.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 산입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공의 수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사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및 지역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①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 내에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도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다른 시·도의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도 내의 다른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의무복무의 위헌성 여부

□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인 지역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의료계는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존 2~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에도 참여 유인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함.²³⁾

23) 대한의사협회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내린 결정례²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면서 각하한 사례²⁵⁾ 등을 참고할 때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²⁶⁾

- 이에 대해 해당 판례에서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이 아닌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변호사가 된 자로서, 서로 다른 시험을 치른 자들에게 다른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하나,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24)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마767 결정

【판시사항】

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항은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軍司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군법무관이 전역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군법무관제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5) 헌법재판소 2018헌마1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은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경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공중보건의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하여 복무하기 시작한 때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및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이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26)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위헌성 찾기 힘들어”“, 메디컬투데이, 2024.1.15.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이라는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역 의사에게 장기 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됨.²⁷⁾

- 위헌성 논란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할 필요가 있음.

(2) 의무복무기간

- 제정안은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전공의 수련 기간, 군복무 기간, 의사면허 효력정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분야가 필수 의료분야 전문과목인 경우의 수련기간, 공중보건 의사²⁸⁾ 및 군보건 의료인²⁹⁾으로 복무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27)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4. 1. 29.

28)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병(兵)·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 전공의 수련 기간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불산입하면서 특정 수련전문과목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기간을 지역 의사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분야³⁰⁾에서 지방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필수의료분야가 아니라면 근무지역에 관계 없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일반의로 근무할 경우 곧바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우려됨.

< 의사인력 양성 및 수련과정 >



자료: 보건 의료인력 실태 조사(2021)

- 또한 제정안 제8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내 보건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문 과목은 지역에 필요한 분야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0) 현행 법령상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아직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우리 위원회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94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7호)이 계류되어 있는데, 동 제정안들에서는 필수医료를 각각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 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 영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안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은 안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
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다음과 같은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함.

- 제정안이 예시를 들고 있는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은 필수
의료의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법령상의 전문의
전문과목 분류³¹⁾와는 다르므로,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응급·중증·
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과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³²⁾
- 제정안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66조에서는 ‘효력정지’와 ‘자격
정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³³⁾ 제정안 제15조제4항에서도

3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32) 참고로,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수련전문과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우선지원 대상 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33)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집행 시 ‘효력정지’는 ‘자격정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³⁴⁾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해석상 당연히 배제될 것이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의무복무기관

□ 제정안은 의무복무기관에 대하여 지역을 제한하거나 시설·기관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 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의사를 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34) [법제처 16-0640, 2017.1.2.,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 [회답] 「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앞서 검토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역별 선발 여부와도 연계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교의 소재지로 국한되는지 여부, 아니면 졸업학교와 관계 없이 면허취득 시점의 상황에 따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복무하도록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박덕흠의원안은 공중보건 의사³⁵⁾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기관의 종류를 보건소·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3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4.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면허취소 및 과태료

가. 내용

- 제정안은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지원과 의무복무 완료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취소와 근무실적 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14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해당 시·도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1) 면허취소 요건 구체화 필요

□ 면허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의무복무 미이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령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 이 경우 얼마의 기간 동안 이탈하여야 미이행에 해당하는지, 파업이나 태업 등도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2) 면허취소 재교부 관련 요건 명확화 필요

□ 제정안 제15조제2항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 재교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5조제2항에서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취지가 의무복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의사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가 재교부되어야 하므로 제2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 후자의 취지라면, 제정안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고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역 의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도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의사면허 재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의료법」 제65조제2항³⁶⁾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36) 「의료법」 36)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에 대하여만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떤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지 제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을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2호의 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5. 부칙

가. 내용

-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법률 제17956호, 2021. 3. 23.)³⁷⁾에서는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선발 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례를 둔 바 있음.

37) 부칙 <법률 제17956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 개요
--------------	-----------------------

1. 사업명 :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시도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의대생	2	1	3 (1~2학년만)	1	10	2	2	-	-
간호대생	7	1	-	21	21	5	5	8	2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 ④ 전문의 수련, ⑤ 조산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品行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참고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간호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3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5%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다.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권이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권이 아닌 지역	2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1호의 최소입학 비율 =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전체인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인원}}{\text{모집단위별 입학전체인원}}$

나. 제2호의 최소입학 비율 =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 전체인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입학전체인원}}$